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795,913,736	203,877,412
일반회계	6,138,227,156	184,146,815
특별회계	657,686,580	19,730,597
기타특별회계	657,686,580	19,730,597
소방특별회계	260,657,638	7,819,72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11,434,827	9,343,045
농어촌개발기금특별회계	9,844,526	295,336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32,104,425	963,133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1,906,994	357,210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30,136,020	904,081
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1,602,150	48,065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55,915,894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40,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9 조 금회 추경 후 연말까지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지원사업과 그에 따른 도비 부담금 및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명시이월, 계속비이월 포함)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